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254호)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2. 제안일자 : 2025년 1월 6일

3. 회부일자 : 2025년 1월 7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해외긴급구호를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재난 발생 직후의 긴급구호뿐 아니라 예방, 대응, 재건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의 감소·복구 등의 지원에 한정된 우리나라의 해외 긴급구호의 범위가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의 범위에 잠재적 해외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해외긴급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개정안은 ‘해외긴급구호’의 범위에 ‘해외재난에 의한 피해의 예방’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넓히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해외긴급구호”란 <u>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u>해외재난에 의한 피해의 예방·감소-</u> ----- ----- ----- -----.

동 법률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를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해외긴급구호의 종류를 열거한 현행법 제5조1)를 살펴보면, 해외긴

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5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① 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지원
3. 현금지원
4. 보건의료활동
5. 수송지원
6. 임시 재해복구

급구호의 종류에는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 KDRT)의 파견, 구호 물품·장비 지원, 현금지원, 보건의료활동, 수송지원, 임시 재해복구 등 해외재난이 발생한 국가의 피해 감소와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활동들이 포함됨.

<해외긴급구호의 종류>

구분	내용
대한민국 해외긴급 구호대 파견	○ 다수의 이재민, 부상자 또는 지진 매몰자 발생시 구조팀 및 필요시 의료팀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구호물품의 지원	○ 재난 피해국 정부가 희망하는 품목 중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품목 지원
현금 지원	○ 재난구호 및 피해복구를 위한 제도적 역량을 갖춘 피해국에 대해 현금지원
보건의료 활동	○ 피해국 정부와 협의하여 긴급구호대 의료팀을 파견하거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원, 방역 활동, 전염병 예방(교육) 등 실시
수송지원	○ 구호인력 또는 구호물품을 군수송기, 민간 항공기 등을 이용한 수송
초기복구	○ 긴급구호단계에서 중장기 재건복구 단계로 이행하는 과도기 사업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 유엔인도지원조정실(UNOCHA),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난민기구사무소(UNHCR) 등 국제기구가 유엔긴급지원요청(Flash Appeal) 등을 통해 지원 요청하는 재난에 대해 지원

자료: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 외교부 등(2021.4.)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 조사 및 긴급구호 수요 평가
2.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즉, 현행법상 해외긴급구호는 해외재난이 발생한 이후 피해국 지원을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개정안은 해외긴급구호를 이러한 ‘사후적 지원’에서 나아가 해외재난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사전적 지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해외긴급구호의 정의를 개정안과 같이 확대할 경우, 특히 개발도상국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해외재난으로부터의 피해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예를 들어, 2021년부터 시작된 ‘재해경감을 위한 마닐라 통합 홍수 조기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²⁾은 필리핀 수도권 내 홍수 조기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 시 정부 및 커뮤니티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인데, 정부의 재해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홍수 발생에 대한 회복력을 높여 주민의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해외긴급구호’라는 용어는 그 자체적으로 재난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필요한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의미하는바, 사전적인 예방 조치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의 취지와 전반적인 내용이 해외재난 발생 이후의 사후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정의 조항의 개정만으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동 법률의 내부적 정합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2) 필리핀 재해경감을 위한 마닐라 통합 홍수 조기에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집행계획, KOICA

참고로, 사후적인 구호에 초점을 맞춘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현행법을 위기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개념까지 포함하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으로 개정하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동 법률의 범위를 인도적 지원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³⁾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문 의 처
02) 6788-5264

3) 의안번호 2204092, 이재정의원 등 21인